

① 이름 변경 절차의 비밀 유지

이름 변경은,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금지명령 집행, 여권 발급, 학교 프로그램 신청, 부동산 구매 또는 임차, 취업, 신용거래 이용, 사업 개시 등의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정부법 § 6205 이하에 따른 주무장관의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참여자인 경우 및 (1) 가정폭력, (2) 스토킹, (3) 성폭력, (4) 인신매매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의 현재 법적 성명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이름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원의 달력, 색인 또는 소송 기록부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 해당 신청인의 이름을 공고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변경 후 이름은 법원 기록에 전혀 기록되지 않으며 공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 1277(b).)

신청인의 현재 및 변경 후 법적 이름을 법원에서 비공개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②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선임이 가능한 경우 비공개 이름 변경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려면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시작하는 방법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실의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 변경 의향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귀하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름 변경 의향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받게 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은 무료 전화 1-877-322-522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sos.ca.gov/safeathome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④ 제출처

이름 변경 신청은 이름을 변경할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⑤ 이름 변경 대상

본 신청은 자신의 이름 변경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예: 만 18세 미만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접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⑥ 아동의 이름 변경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그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와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름 변경 신청 안내문 (양식 [NC-100-INFO](#)) 항목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는 자녀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⑦ 필요한 양식

이름 변경 신청 안내문(양식 [NC-100-INFO](#)) 항목 4에서는 이름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양식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100](#)), 사유 소명 명령—이름 변경 (양식 [NC-120](#)) 및 이름 변경 판결문 (양식 [NC-130](#))에서 현재 법적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변경할 이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신, 변경할 이름이 비공개 정보이며 주무장관의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고 작성하십시오.
- 이름 변경 신청서 첨부서류(양식 [NC-110](#))에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 비공개 표지—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세이프 앤 홈)(양식 [NC-400](#))을 작성하여 양식을 제출할 때 첨부하십시오. 양식 [NC-400](#)은 첨부 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식 [NC-400](#)에 현재 법적 이름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식 [NC-400](#)을 작성하여 이름 변경 절차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십시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서 보낸 서신 사본이 법원 제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귀하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고 이름 변경 의향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록을 위해 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⑧ 법원 심리기일 요청 및 사유소명명령 받기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100)를 제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유소명명령—이름 변경(양식 NC-120) 또한 제출 및 공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름 변경 신청 안내문(양식 NC-100-INF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 앤 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고, (1) 가정폭력, (2) 스토킹, (3) 성폭력, (4) 인신매매를 피하기 위해 이름 변경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소명명령을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최소 6주 후에 이름 변경 사유소명명령에 대한 심리기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서기 사무실로 가져가십시오. 서기가 심리기일과 장소를 안내하고, 사법관(판사)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귀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⑨ 법원 심리

심리 최소 2일 전까지 서면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심리 없이 신청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열릴 것인지 알아보려면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심리가 있는 경우 모든 문서의 사본을 심리에 가져오십시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사법관은 이름 변경 판결문(양식 NC-130)에 서명합니다.

⑩ 봉인된 서류 제출 신청

현재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봉인하여 제출된 문서는 보호되며 공공 기록과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귀하 사건의 사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함을 설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귀하의 서류를 봉인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기록에 대한 공개 접근 권한을 제한할 만큼 이를 우선하는 이익(구체적인 사유)이 존재합니다.
- 그 우선하는 이익은 이름 변경 관련 서류를 봉인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 기록이 봉인되지 않으면 그 우선하는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기록 봉인을 위한 명령안은 그 우선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 우선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록을 봉인하는 것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봉인하여 접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려면,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2.577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세이프 앤 홈)에 따른 이름 변경 절차에서 봉인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신청서(양식 [NC-410](#)) 및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세이프 앤 홈)에 따른 이름 변경 절차에서 서류 봉인 제출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양식 [NC-420](#))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NC-420에 귀하 사건의 사실이 봉인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신청서에 비공개 표지(양식 NC-400)를 첨부하십시오. 봉인하여 접수되기를 원하는 모든 서류는 ‘조건부 봉인(Conditionally Under Seal)’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맨 위에 양식 NC-400을 올려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봉투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이 절차를 ‘임시 제출(lodging)’이라고 합니다). 신청서가 거부되는 경우,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서류 접수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기가 서류를 반환합니다.

⑪ 기록 공개

서류가 봉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귀하의 이름은 다음을 제외하고 계속 비공개 처리됩니다.

-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가 정부법 § 6206.7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신청서의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성폭력에 관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민사소송법 § 1278(b) 참조)

다른 사람이나 법원이 이러한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하여 기록을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열어야 하며, 귀하에게 통지가 발송될 것입니다.

(정부법 § 6206(a)(5)(A).)

세이프 앤 홈 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이 더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법원은 이름 변경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와 신청의 심리 시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